

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297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03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2년 3월 0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(2022.1.13.)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 변경 및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조문 변경 (안 제1조, 안 제2조)
 - 지방자치법 제16조 →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